

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 펀드명: 트러스톤장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(주식)

□ 변경 사항:

- (1)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집합투자기구 변동성 업데이트
- (2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 예정일: 2018년 11월 1일(목)

□ 변경 내용:

- (1)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집합투자기구 변동성 업데이트:

[항목]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)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)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) 표준편차 업데이트

대상펀드명	정 정 전	정 정 후
트러스톤장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(주식)	11.64%	10.05%

[항목]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

- (2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공제제도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(좌동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(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일 경우 15%)	- (신설)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)
나. 과세	분리과세한도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	분리과세한도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



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
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

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
 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
- 

트러스톤자산운용(주)